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영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49

발의연월일 : 2021. 5. 17.

발 의 자:고영인·김상희·김홍걸

박광온 • 서영교 • 양경숙

윤준병 • 이성만 • 전용기

조승래 · 최종윤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은 고시할 수 있고,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출하면 「식품・의약품분야 시험・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축산물 시험・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고시 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출한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관련 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대한 조치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

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1호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제3항에 따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인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.

제9조의4제4호 중 "제4조제5항·제6항"을 "제4조제6항·제7항"으로 한다.

제12조제7항 중 "제4조제5항·제6항"을 "제4조제6항·제7항"으로 한다.

제27조제1항제1호 중 "제4조제5항·제6항"을 "제4조제6항·제7항"으로 한다.

제28조제1항 단서 중 "제4조제5항·제6항"을 "제4조제6항·제7항"으로 한다.

제33조제2항 중 "제4조제5항·제6항"을 "제4조제6항·제7항"으로 한다.

제36조제1항제1호 중 "제4조제5항"을 "제4조제6항"으로, "제6항"을 "제

7항"으로 한다.

제37조제2항 본문 중 "제4조제5항·제6항"을 "제4조제6항·제7항"으로 한다.

제39조제1항 본문 중 "제4조제5항·제6항"을 "제4조제6항·제7항"으로 한다.

제45조제4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1호의2(종전의 제1호) 중 "제4조제5항"을 "제4조 제6항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제4조제6항"을 "제4조제7항"으로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) ①	제4조(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) ①
~ ③ (생 략)	~ 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
	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제3항에
	따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
	인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
	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이를
	취소하여야 한다.
<u>④</u> ~ <u>⑥</u> (생 략)	<u>⑤</u> ~ <u>⑦</u> (현행 제4항부터 제6
	항까지와 같음)
제9조의4(인증의 취소 등) 식품의	제9조의4(인증의 취소 등)
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	
작업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	
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렁으로	
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	
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	
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5호에	
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	
취소하여야 한다.	<u>.</u>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제4조제5항·제6항</u> , 제5조제	4. <u>제4조제6항 · 제7항</u>
2항,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	
까지, 제18조 또는 제33조제1	

항을 위반하거나 제36조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 을 위반하여 제27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(영업 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) 명 령을 받거나 그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 우

5. ~ 8. (생략)

- 제12조(축산물의 검사) ① ~ ⑥ (생 략)
 - ⑦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하거나 제6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한 영업자는 검사 결과해당 축산물이 제4조제5항·제6항 및 제3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⑧・⑨ (생략)

제27조(허가의 취소 등) ① 시· 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 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, 6개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

_
5. ~ 8.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축산물의 검사) ① ~ ⑥
(현행과 같음)
7
제4조제6항·제7
항
· ⑧·⑨ (현행과 같음)
제27조(허가의 취소 등) ①

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 거나, 영업소 폐쇄(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명할 수있다. 다만,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1. 제4조제5항·제6항, 제5조제 2항, 제8조제2항, 제9조제2항 • 제3항, 제9조의3제7항, 제1 0조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1 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.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14조제2항, 제16조, 제17조, 제18조, 제19조제5항, 제21조, 제22조제5항, 제24조제2항, 제25조, 제29조제2항 · 제3항, 제30조제5항 · 제6항, 제31조, 제31조의2제1항 · 제2항, 제31 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, 제31조의4제1항 후단・ 제2항 단서, 제33조제1항 또 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

2. ~ 6. (생략)

1. <u>제4조제6항 · 제7항</u>
2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⑥ (생 략)

제28조(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 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) ①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 수 · 구청장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그 이용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 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있다. 다만, 제4조제5 항 · 제6항, 제8조제2항, 제9조 제2항, 제17조 또는 제33조제1 항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총리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.

② ~ ⑤ (생 략)

- 제33조(판매 등의 금지) ① (생략)
 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식품제조·가공업,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업자가 제1 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28조(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
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)
①
제4조제6항
· 제7항
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33조(판매 등의 금지) ① (현행
과 같음)
②
<u>a</u>

아니한 식육 또는 제4조제5항 ·제6항 또는 이 조 제1항에 위반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·사용· 보관·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의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그 영업허가의 취소, 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수 있으며,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36조(압류・폐기 또는 회수) ① 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 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관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축산 물위생감시원(이하 "축산물위생감시원"이라 한다)에게 이를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용도,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

	- <u>제4조제6항 • 제7</u>
<u>ŏ</u> }	
	·
제36조(압류·폐 	기 또는 회수) ①
제36조(압류·폐 	기 또는 회수) ①
제36조(압류·폐 	
제36조(압류·폐 	

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- 1. <u>제4조제5항</u> 또는 <u>제6항</u>을 위 반한 축산물
- 2. ~ 8. (생략)
- ② ~ ⑤ (생 략)

제37조(공표) ① (생 략)

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가 제4조제5항·제6항, 제5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해당축산물과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수 있다. 다만, 축산물 위생에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하여야한다.
- ③ ~ ⑤ (생 략)
- 제39조(포상금) ①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은 <u>제4조제5항·제6항</u>, 제7조제1항·제5항, 제10조, 제 22조제1항, 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 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가공, 포장, 사 용, 보관, 운반, 진열 또는 판매

	1. <u>제4조제6항제7항</u>
제;	2. ~ 8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37조(공표) ① (현행과 같음) ②
	제4조제6항 · 제7항
(

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 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 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 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 에 협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② (생략)

제45조(벌칙) ① ~ ③ (생 략)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신 설>

- 1.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 의 도살·처리, 집유, 축산물 의 가공·포장·보존 또는 유 통을 한 자
- 2. <u>제4조제6항</u>을 위반하여 축산 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 으로 보관·운반 또는 진열한 자

② (현행과 같음)
제45조(벌칙) ① ~ ③ (현행과
같음)
4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
법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인
정을 받은 자
<u> 1의2.</u> 제4조제6항
2. <u>제4조제7항</u>

3. ~ 16. (생 략)	3. ~ 16. (현행과 같음)
⑤ ~ ⑦ (생 략)	⑤ ~ ⑦ (현행과 같음)